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규정)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정서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이용료>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1,820
	장기요양 2등급	38,720
	장기요양 3등급	35,740
	장기요양 4등급	34,120
	장기요양 5등급	32,490
	인지지원등급	32,490
6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6,060
	장기요양 2등급	51,930
	장기요양 3등급	47,940
	장기요양 4등급	46,300
	장기요양 5등급	44,650
	인지지원등급	44,650
8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730
	장기요양 2등급	64,590
	장기요양 3등급	59,640
	장기요양 4등급	58,010
	장기요양 5등급	56,360
	인지지원등급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6,820
	장기요양 2등급	71,160
	장기요양 3등급	65,750
	장기요양 4등급	64,090
	장기요양 5등급	62,460
	인지지원등급	56,36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2,370
	장기요양 2등급	76,310
	장기요양 3등급	70,500
	장기요양 4등급	68,860
	장기요양 5등급	67,240
	인지지원등급	56,360

* 총 금액의 15%는 자기부담 원칙

<비급여 항목>

분 류		금액(원)
식 비	중 식	1식 4,950
	석 식	1식 4,95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는 이용 대상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